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(5.28)」의 후속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
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) 이 규
칙 시행 전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제47조의3 제1항에 따
라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
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7조(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)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(법령의 제정·개정, 국무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결정에 따라 이전하게 된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여 본부·본청·본사무소·본교·본원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한다)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2.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	제47조(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) <삭 제>

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	
3. 기업, 연구기관,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	
② ~ ⑨ (생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정할 수 있다.	⑩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항의 경우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	<삭 제>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⑪ (생략)	⑪ (현행과 같음)